

2026

2025년 국가유산관련법령 기출문제 상세해설

엠북 자격증

공부혁명!
mbook.kr

- ✦ **PDF 전자책**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시험 교재**
- ✦ **출제경향 분석, 고득점 전략**
- ✦ **기출문제 상세 해설**

도서명 : 2025년 국가유산관련법령 기출문제 상세해설

ISBN : 979-11-7393-085-0

발간일 : 2025-10-20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3,500원



2025년 국가유산관련법령 기출문제 상세해설

[목차]

I. 출제경향 및 고득점 전략(p3)

II. 국가유산관련법령 기출문제(p4~31)

- 문화유산법
- 자연유산법
- 국가유산수리법
- 매장유산법
-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 고도육성법
- 문화유산신탁법
- 무형유산법

[비고]

검은색은 기출문제 지문

남색은 법률 내용

보라색은 시행령 내용

갈색은 시행규칙 내용

I. 출제경향 및 고득점 전략

1. 출제 문제 수 및 비중

- 문화유산법 5 (20%)
- 자연유산법 3 (12%)
- 국가유산수리법 7 (28%)
- 매장유산법 5 (20%)
-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0 (0%)
- 고도육성법 2 (8%)
- 문화유산신탁법 1 (4%)
- 무형유산법 2 (8%)

2. 출제 경향

- 문화유산법, 국가유산수리법, 매장유산법에서 17문제(68%) 출제
-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서 출제안됨
- 시험범위가 아닌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출제안됨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모두 출제됨
- 별표에서는 출제안됨

3. 고득점 전략

- 문화유산법, 국가유산수리법, 매장유산법 중점 공부(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내용 포함)
- 2026년 시험에서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서 1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
- 법률 내용은 모두 숙지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내용도 암기 필요
- 고득점을 위해 별표 주요 내용도 공부할 필요 있음

Ⅱ. 국가유산관련법령 기출문제

[문화유산법]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문화유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와의 협의

법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 3.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지정문화유산 중 석조건축물류
- ②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 ③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 ④ 매장유산으로 토지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대통령령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 2. 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 3.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 4. 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법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 2.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 ② 국보의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정된 보물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을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한 경우, 그 효력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②

- ① 2명이 아니라 3명
- ③ 보물/국보,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문화유산위 심의거쳐 해제
- ④ 임시지정은 관보 고시안함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토지 및 수면의 매립
- ㄴ.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ㄷ.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행위
- ㄹ.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 ① ㄱ,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②

안내판 설치하는 국가유산청장 허가 사항 아님

가. 문화유산/자연유산 공통

- 보호물/구역 포함
-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명승 내 다음 행위
-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수입/반입 신고된 것 포함

- 1)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철거
- 2) 건축물 등 신축, 개축, 증축, 이축, 용도변경
 - 단, 지목변경 제외
- 3) 수목을 심거나 제거
- 4) 지형/지질 변경
 - 토지/수면 매립, 간척, 땅파기, 구멍뚫기, 땅깍기, 흙쌓기
- 5) 소음/진동/악취 유발
- 6)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열 방출
- 7) 오수/분뇨/폐수 살포, 배출, 투기
- 8) 동물 사육/번식
- 9) 토석/골재/광물, 부산물/가공물 채취, 반입, 반출, 제거
- 10) 광고물 설치, 물건 쌓기
- 11) 탁본, 영인(원본을 사진 등으로 복제), 다음 촬영 행위
 - 유산을 다른 장소로 옮김
 - 유산 표면에 촬영 장비 접촉
 - 빛/열 지나치게 방출
 - 촬영 장비 충돌/추락 등 유산에 물리적 충격

나. 문화유산

1) 국가지정유산 현상 변경

-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구조물 등 시설물 신축 등
- 수로, 수질, 수량 변경 등

2) 국가지정유산(단, 동산 제외) 보존에 영향

가) 보존지역

- 경관 저해 우려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 지하 50m 이상 땅파기
- 토지/임야 형질 변경

나) 수로의 수질/수량에 영향 줄 건설공사 등

다) 유산과 연결된 유적지 훼손

라) 유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에 영향 줄 유산 외곽 경계 밖의 청장 고시 행위

다. 자연유산

1) 천연기념물/명승 보존에 영향 미칠 다음 행위

a) 천연기념물 포획, 채취, 사육, 도살, 인공증식, 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 방사, 표본, 박제, 매장, 소각

- 혈액, 장기, 피부 채취 포함
- 치료목적, 구조/치료 후 방사 제외

b) 천연기념물/명승 내

- 수질, 수온, 수량에 영향 줄 행위

2) 천연기념물/명승

- 지정, 임시지정 구역, 보호구역에서 동식물, 광물 포획, 채취, 반출